의안번호		제2	2048호
의	결	2019.	10
연 程	일 일	(제	회)

의	
결 사 항	
사	
항	

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향숙 의원 외 4인
발의연월일	2019. 10. 1.

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향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48

발의연월일: 2019. 10. 1. 발 의 자: 김향숙·이용재·최상림·김원순 정영환 의원(5인)

1. 개정이유

○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설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센터 시설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- 자원봉사자 활용방안(안 제10조)
- 주민참여 방안 마련 의무 규정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건강가정기본법」제35조
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9-28호

- 예고기간: 2019. 10. 4. ~ 10. 10.(6일)

- 의견반영 등 조치내용: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삭제하고, 제6조를 제8조로 하며,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.

제7조를 제9조로 하고, 제4조, 제7조,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조(시설)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교육실, 상담실,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한다.
- 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.
 -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, 센터장이 되고, 위촉 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- 1. 센터 이용자 대표
- 2. 센터 직원 대표
- 3. 지역주민 대표
- 4. 가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- 5. 가정문제, 건강가정 또는 가족문화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10조(자원봉사자) 군수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.
- 제11조(주민참여)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센터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조(시설) 군수는 제3조에 따른
	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
	교육실, 상담실, 자료실 등 필요
	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
	을 갖추어야 한다.
<u>제4조</u> · <u>제5조</u> (생 략)	<u>제5조</u> • <u>제6조</u> (현행 제4조 및 제5
	조와 같음)
<u>제6조</u> (생 략)	<u>제8조</u> (현행 제6조와 같음)
<u><신 설></u>	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사
	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
	기 위하여 고성군 건강가정지원
	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
	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	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
	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
	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
	원 중에 호선한다.
	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를
	담당하는 부서장, 센터장이 되
	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
	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	<u>1. 센터 이용자 대표</u>
	<u>2. 센터 직원 대표</u>
	<u>3. 지역주민 대표</u>

제7조 (생략)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.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- 4. 가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- 5. 가정문제, 건강가정 또는 가 족문화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<u>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</u> <u>한다.</u>
-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<u>제9조</u> (현행 제7조와 같음) <u><삭 제></u>

- 제10조(자원봉사자) 군수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.
- 제11조(주민참여)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

<u>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</u>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센 터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.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건강가정기본법

제35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·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, 가족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(이하 "건강가정사"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
-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.
- 1.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- 2.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·가정학·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
- ④센터의 조직·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·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수 있다.

□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

제3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)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

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·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,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·인사·복무·보수·회계·물품·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·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